

##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

### □ 제안이유

광역소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외용소방대 운영 체계를 정비, 외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소방서 설치시의 조례와 군지역 조례를 통합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임

### □ 주요골자

- 2원화된 조례 단일화
  - 시(소방서), 군 외용소방대설치조례 통합 → 도 외용소방대 설치조례
- 설치권자 조정(제2조)
  - 시장·군수 → 도지사
- 외용소방대명령 변경(제3조)
  - 소방서관할구역 : ○○소방서 외용소방대 → ○○소방서 외용소방대  
○○소방서 ○○읍·면 외용소방대
  - 소방서 미관할구역 → ○○읍·면외용소방대를 ○○군 ○○읍·면의  
용소방대
  - 지대명칭 변경 : 지대 → ○○소방서 ○○지역의용소방대
- 임용기준 추가(제5조)
  -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자 중 자원하는 자
    -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자 중 자원하는 주민으로 다음 사항 고려
      - 관할구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
      -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
      - 신앙이 두터우며 의용봉공 정신이 강한 주민
- 대장·부녀대장 지휘·감독체계조정(제7조)
  - 소방서장, 읍, 면장 → 소방서장, 군수

- 임용권자 조정(제10조)
  - 대장, 부대장, 부녀대장, 부녀부대장, 지역대장 : 소방서장, 읍, 면장 추천, 시장·군수 임용 → 소방서장, 군수 추천 도지사 임용
  - 대원 : 대장 추천, 소방서장, 읍·면장 경유 시장·군수 임용  
→ 대장 추천, 소방서장, 군수 임용
- 의용소방대 점열 강화(제20조) : 연1회 → 연 2회
- 의용소방대의 경비
  - 기본경비 : 시·군예산 → 도예산에 편성
  - 활동비 보조 등 신설(24조)
- 재해보상 청구 지급(제30조)
  - 소방서장, 읍·면장 경유, 시장·군수 → 대장 경유, 소방서장 군수
- 의용소방대연합회 규정 신설(제31조)
  - 도연합회 : 시·군행정구역 단위 외소대 대표로 구성
  - 시·군연합회 : 관할행정구역내 각 대장으로 구성
- 연합회경비지원 규정 신설(제32조)
  - 도연합회및 시·군연합회 : 도지사
  - 시·군연합회 활동 필요경비 : 시장·군수
- 관할구역내 업무지원 규정 신설(제34조)
  - 시장·군수의 외소대 지원요청시 소방서장(외소대장)적극 참여 지원

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○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(참조)